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④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발주자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점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발주자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공 전 발주자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발주자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관리감독자 지정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발주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특별교육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발주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②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 조치)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른다.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

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자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발주자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발주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자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발주자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른다.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자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분야별 “안전작업허가지침”을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② 열원·열수송·배전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의 분야별 “안전작업허가지침”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작업
2. 철골 구조물작업
3. 외부 도장작업(2m 이상)
4. 승강기 설치작업
5. 가설작업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7조의2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 감독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발주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0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발주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발주자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적 정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장소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발주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4.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발주자는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발주자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의2(책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의 경우 [별표 3]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자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자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국가 및 발주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1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2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3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1 안 전 수 칙

주 요 내 용		
①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② 음주 후 작업 금지	③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④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⑤ 발주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⑥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⑦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⑧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⑨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2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단, 주기기구매설치는 열원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기존 설치된 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열원분야 공사는 제외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동일 근로자 2차 위반)
① 발주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① 발주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해당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해당 모든 결과를 발주자 감독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해당 모든 결과를 발주자 감독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발주자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승인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2회 위반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금지 조치한 후 발주자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투입 금지	④ 발주자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승인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동일 근로자 2차 위반)
① 발주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발주자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발주자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투입 금지	① 발주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입금지 조치 후 발주자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별표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기준

구 분	안 전 활 동 결 과	점 수
상 점	당해 계약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및 단체가 발주자 기관장이 수여하는 안전분야 표창장을 수여 받은 경우	20점/건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안전수칙 2차 위반자를 조치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10점/건
	소속 근로자가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Safety Call)한 경우	5점/건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포상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 - 현장 안전개선 아이디어(안전제안)를 제공한 근로자 포상	 5점/건 (최대 20점) 0.2점/건 (최대 20점)
벌 점	근로자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500점/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50점/명
	근로자가 제6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 시	2점/건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은폐 및 보고 누락*할 경우	30점/건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지연** 보고할 경우	2점/일·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상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0점/건

* 은폐 및 보고 누락 : 언론,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제3자로부터 인지

** 지연 : 중대재해 발생후 3시간 이내, 부상 발생일 당일 작업종료 후 5시간 이내 미보고(발주자 감독부서에 유선 및 서면)

※ 소속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2 교체기준 : 누계벌점 100점 이상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체 요청

구 분	교 체 대 상	누계벌점*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점

* 착공일을 기준으로 만 1년 마다 누계벌점을 관리하고 상점을 받은 경우 누계벌점에서 감한다.

- 누계벌점 산식 : Σ벌점 - Σ상점

[별지 제1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발주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발주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위반내용 ○ ○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 ○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별지 제2호 서식]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 기록 대장

번호	신고인	신고 일시	신고내용	처리내용	처리 일자	처리자	책임자 확인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3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사진 포함 등)을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

계 약 명		계약상대자	
발주자 주관부서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계약 기간		대상 기간	

발 생 일	상점부과/벌점부과 내용	장 소	점 수	확인자(서명)	
				계약상대자	발주자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누계점수					

※ (확인자 서명) 발주자는 감독부서 관리감독자,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명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상기 계약자는 **안산/송산 집단에너지 열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작업 중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작업 시 개인 안전 보호장비(검전기,활선경보기)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안전에 관한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모든 작업에 임할 때 제반안전수칙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이겠다.
○ 회사에서 지정해준 작업 외엔 절대 하지 않겠다.
○ 모든 안전규칙과 안전표시의 지시에 적극 따르겠다.
○ 작업 중 나타난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겠다.
○ 작업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겠으며, 동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작업 중 재해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재해 상태를 극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년 월 일

소 속 : 서약자 : 현장대리인 (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